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8가단12350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김치련, 송희근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석 담당변호사 최재형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2020. 5. 15.

판결 선고2020. 6. 5.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8. 21.자 위촉계약직 지점장 추가위촉계약 및 2015. 8. 28.자 설계사 위촉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9,61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9,61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7. 접수 제727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8. 21.자 위촉계약직 지점장 추가위촉계약 및 2015. 8. 28.자 설계사 위촉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수 수수료 및 기타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7. 접수 제727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위촉계약직 지점장 위촉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8.경 피고 회사의 설계사(Financial Planner; FP, 이하 '설계사'라고 한다)로 위촉되었고, 2015. 8. 21.경 위촉기간을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신사지점(이하 '신사지점'이라 한다)의 위촉계약직 지점장(이하 '위촉계약 지점장'이라고만 한다)으로 위촉되었다.

2) 원고는 2015. 9. 4.경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를 원고, 별지 부동산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설계사 위촉계약 및 추가업무위촉계약, 수수료반환약정 등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게 될 수당반환채무, 손해배상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 채권최고액을 6,6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7.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피고의 수수료 지급 기준

피고의 'CY2015년 8월 FP 보험영업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는 설계사 및 지점장 등에 대한 각종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기본(보장)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고만 한다)

가. 지급대상

□ 2015년 3월 이후 위임 위촉계약 지점장

나. 기준 및 지급액

□ 위임차월별 지급금액

기준 달성	500만원	400만원	350만 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 원
기준 미달	400만 원 (선위촉)		250만원	200만원	150만 원	50만 원

다. 환수

□ 18개월 이내 해임(해촉)시 기지급된 기본수수료의 환수액 환수

환수액	(생략)	기지급 기본수수료×70%	(생략)
-----	------	---------------	------

○ 조직비례수수료

가. 지급대상 : 1차월 이상 위촉계약 지점장, 선위촉 지점장

나. 기준 및 지급액 : 지점산하 설계사 환산점수(P) 규모별 차등 지급

지급액	인당 300,000원	인당 150,000원
-----	-------------	-------------

○ 효율비례수수료

가. 지급대상 : 1차월 이상 위촉계약 지점장 중 적용대상인 위촉계약 지점장

나. 지급기준

□ 소속 설계사 신계약비례수수료 분급분 총액 × 지점 2~13회 통산유지율에 따른 지급률

지급률	25%	20%	15%	10%	8%	5%
-----	-----	-----	-----	-----	----	----

○ 해지취소.무효계약 발생시 환수 기준

가. 해지취소. 무효계약 : 관하 지점 설계사 모집계약 중 해지.취소. 무효 등으로 기납입 보험료가 환급된 계약

나. 해지취소. 무효계약 발생시 조치

□ 위촉계약 지점장 수수료 산출시 성적 환수 또는 기지급 수수료 환수

□ 성적 및 수수료 환수 기준

(생략)

다. 원고의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수수료 수령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사지점의 위촉계약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1) 기본수수료 2015. 9.부터 2016. 7.까지 위임차월 및 기준 달성 여부에 따라 매월 240만 원 내지 500만 원씩 합계 4,23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조직비례수수료 신사지점 소속 설계사인 D, E가 2015. 9.과 2016. 7. 각 모집한 계약의 효율점수가 50만 점 이상 100만 점 미만이었으므로 2015. 10.경 150,000원, 2016. 8.경 12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3) 효율비례수수료 2015. 10.경 신사지점 소속 설계사인 D이 받은 신계약비례수수료 분급총액에 대하여 해당 지급률(25%)을 곱한 금액인 8,897원, 2016. 6.경 신사지점 소속 설계사인 F이 받은 신계약비례수수료 분급총액에 대하여 해당 지급률(5%)을 곱한 금액인 1,242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신사지점 소속 설계사와 원고의 업무 실태

1) 원고는 2015. 8. 31.경 원고의 자녀인 G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모집인을 신사지점 소속 설계사인 H으로 하였으나 H이 아닌 원고가 직접 G로부터 보험계약 청약서에 서명을 받았다. 그 외에도 설계사 H이 2015. 9. 18. 이후 신사지점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H을 모집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이 2015. 9. 30.과 같은 해 11. 30. 각 접수되었다.

2) 원고는 2016. 3. 31.경 팀장급 설계사(Recruiting Manager; RM)인 I에게 설계사 J이 해촉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신사지점 소속 설계사 K가 J으로부터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이자 모집인으로 하는 보험계약 청약서를 접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J이 신사지점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설계사 J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이자 모집인으로 하는 청약서를 출력하여 K에게 전달하고 접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본사에서 청약서 접수를 마감하여 위 청약서가 접수되지는 못하였다.

3) 신사지점의 팀장급 설계사 I은 설계사 L이 2016. 4. 29.자 보험계약과 2016. 5. 31.자 보험계약을, 설계사 M이 2016. 4. 29.자 보험계약을 각 모집한 것처럼 청약서를 작성하여 위 각 설계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청약서를 출력한 후 임의로 보험계약자 명의의 서명을 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게 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설계사들이 신사지점에 출근을 하였는지 실제 보험계약자를 만나 자필 서명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완전판매확인서에 서명하였다.

4) 이와 같이 원고가 신사지점의 위촉계약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위 지점 소속 설계사가 사무실에 장기간 출근하지 않거나 위 지점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시각에 해당 설계사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설계사 명의로 청약서류가 출력되고 보험가입자 명의로 청약서가 작성되는 등 소속 설계사들이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거나(소위 '경유계약'이라 함) 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등 보험업법에 위반한 방식으로 업무가 행해졌다. 당시 원고는 지점장으로서 소속 설계사의 업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설계사들이 실제 신사지점에 출근하였는지, 보험계약자를 만나 자필 서명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완전판매확인서의 지점장 확인란에 위와 같은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서명하였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촉계약 해지 및 수수료 환수 통지

1) 피고는 2016. 8. 1.경 원고에게 보험모집인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벌점초과를 사유로 원고와의 설계사 및 지점장 위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24.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촉계약 지점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수수료 29,610,000원, 비례성 수수료 280,139원 합계 29,890,139원에 대해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6. 12. 25.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지점장 추가위촉계약의 세부 내용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촉계약 지점장에 대한 추가위촉계약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수수료 지급기준

4. 위촉계약 해지 시에는 위촉계약 해지월 익월(위촉월 당월 보장수수료를 지급받은 자는 해지월)부터는 일체의 수수료 및 제반 지원비(시책비, 프로모션 등)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위촉계약직 지점장 수수료 및 제반 지원비(시책비, 프로모션 등) 환수는 'CY2015년FP채널 보험영업지점 위촉계약직 지점장 수수료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에 의거 환수한다.

○ 보장수수료 환수기준

환수액	기지급 보장/기본수수료 *100%	기지급 보장/기본수수료 *70%	기지급 보장/기본수수료 *50%
-----	--------------------	-------------------	-------------------

제7조 위촉계약 해지

회사는 위촉계약직지점장에 대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언제든지 위촉계약직 지점장 추가 위촉 계약 및 설계사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설계사 위촉계약서상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시
4. 기타 위촉계약직 지점장으로서 위탁업무수행 및 회사정책 준수 능력미달, 자격(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 관련 법령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8.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 5 내지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위촉계약서에는 벌점 부과에 세부 사유 및 벌점에 따른 해촉 기준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위촉계약시 벌점 기준표를 명시하거나 원고에게 벌점 부과 기준을 설명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벌점 초과를 이유로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원고에게는 위촉계약에서 정한 적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부당하게 해촉한 것인데,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18개월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촉된 경우에는 이 사건 지침이 정한 기본수수료 환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조직비례수수료와 효율비례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사지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해지, 취소, 무효 등으로 기납입 보험료가 환급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촉계약 지점장으로서 신사지점 소속 설계사가 다른 설계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지 않는지, 보험계약자가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였는지 등 보험업법이 정한 보험모집 방법을 준수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완전판매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허위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허용하였으므로 위촉계약서 및 보험업법이 정한 위촉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고 피고의 위촉계약 해지는 적법하다.

원고는 기본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12차월에 해촉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수수료의 70%를 반환하여야 하고, 신사지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효율점수에 비례하여 조직비례수수료를, 위 지점 소속 설계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신계약비례수수료 분급분 총액에 비례하여 효율비례수수료를 각 지급받았는데 위 각 설계사들이
모집한 계약들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수수료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위촉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원고의 벌점초과를
위촉계약의 해지 사유로 실시하였으나, 벌점 제도는 피고의 내부 심의기관인 보험모집인
심의위원회에서 소속 설계사가 위탁업무와 관련된 피고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였는지 및 해당
사유가 위촉계약의 해지에 이를 정도로 중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누적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내부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피고가 원고에게 벌점 부과 사유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누적된 벌점이 해촉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사 및 위촉계약 지점장 위촉계약을 해지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가 통지한 위 해지사유는 원고가 위촉계약 지점장으로서 업무수행 및 회사정책 준수능력이
미달하여 자격이 부족하여 해지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이러한 보험업법
규정에 위반하여 신사지점 소속 설계사들이 해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묵인하고 때로는 이를 권유하였고 설계사들이 직접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여 보험업법이 정한 금지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는 지점장
위촉계약 제7조 제4호가 정한 "위촉계약 지점장으로서 위탁업무수행 및 회사정책 준수 능력이나
자격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지점장 위촉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의 위촉계약 해지는 적법하다.

나. 피고의 수수료 반환청구의 근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촉계약 지점장 위촉계약서에는 보장수수료 환수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위 계약서 제5조 제5항에는 수수료의 환수는 이 사건 지침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지침에는 보장수수료, 조직비례수수료, 효율비례수수료 등의 각 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환수 기준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은 원고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이 정한 환수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수수료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1) 기본수수료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신사지점의 위촉계약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9.부터 2016. 7.까지 합계 4,230만 원을 기본수수료로 지급받았고 위촉된 때로부터 12차월에 해촉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기지급 기본수수료의 70%인 2,961만 원(=4,230만 원×0.7)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조직비례수수료와 효율비례수수료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신사지점 소속 설계사가 해당 월에 모집한 보험계약의 효율점수에 따라 조직비례수수료를, 신사지점 소속 설계사가 피고로부터 신계약비례수수료 분급분 총액에 비례하여 효율비례수수료를 각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되어 기납입 보험료가 환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조직비례수수료와 효율비례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설계사 위촉계약 및 위촉계약 지점장 추가위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29,610,000원이 남아 있고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설계사 위촉계약 및 위촉계약 지점장 추가위촉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아니라 피고와 체결한 설계사 및 위촉계약 지점장 위촉계약에 기한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어 원고에게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할 이익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환수수료 29,61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 액수에 관해 다툼이 있어 원고가 앞서 인정한 환수수료를 변제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김유진

별지